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1. 본청 "892명"을 "893명"으로, 2. 직속기관 "840명"을 "864명"으로, 3. 사업소 "369명"을 "370명"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한시정원) 자치기획단 행정요원 정원 5명은 1995년 12월 31일  
까지로 한다.